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생활폐기물반출정보 전산 입력 의무화 등〉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00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생활폐기물반출정보 전산 입력 의무화 등	2

I. 제안경위

2026년 4월 29일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6년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유입으로 인한 악취, 대기오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폐기물의 반출·반입 실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계량값, 반출 위치에 관한 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 밖 주민들의 불안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제4항 신설 및 안 제45조).

Ⅲ. 검토의견

1. 생활폐기물반출정보 전산 입력 의무화 등

개정안은 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계량값, 반출 위치에 관한 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5조의2제3항, 제45조), ② 해당 생활폐기물반출정보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 ② (생략) <u><신설></u>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계량값, 반출 위치에 관한 정보, 영상정보 등(이하 “생활폐기물반출정보등”이라 한다)을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u> ④ <u>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반</u>
<u><신설></u>	

현행	개정안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u>출정보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u>
<신 설>	
1. (생략)	1. 생활폐기물반출정보등
2. ~ 3. (생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② ~ ⑤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¹⁾ 및 반입협력금 제도²⁾는 기초지방

1)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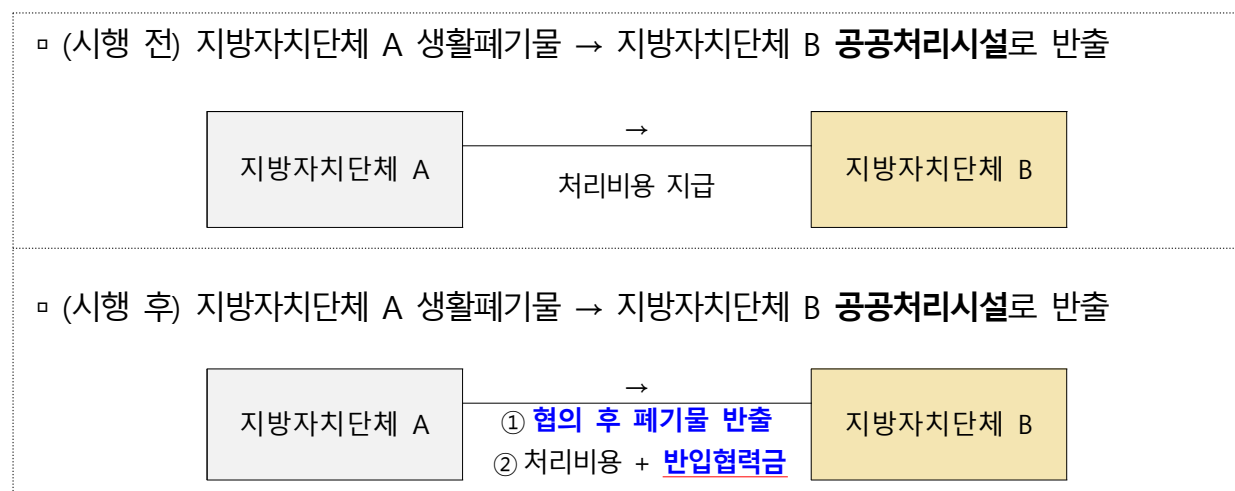
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개선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발생지)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하되,

생활폐기물이 발생지 외에서 처리되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징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2022. 12. 27. 「폐기물관리법」 개정(2024. 12. 28. 시행)을 통하여 도입되었음.

【 발생지 처리 원칙 및 반입협력금 시행 전·후 비교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편, 생활폐기물 주체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처리는 2021년 1,095만톤에서 2023년 1,040만톤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민간 위탁처리가 2021년 576만톤에서 2023년 623만톤으로 증가하고 있음.

【 생활폐기물 주체별 처리현황 】

(단위: 만톤)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공공	자가	위탁	공공	자가	위탁	공공	자가	위탁
총 계	1,095	4	576	1,060	5	611	1,040	6	623
매 립	247	-	1	211	-	1	177	-	1
소 각	440	-	61	428	-	67	434	-	64
재활용	401	4	510	408	5	540	421	6	552
기 타	7	-	4	13	-	3	8	-	6

자료: 국가통계포털-“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_생활폐기물” 재구성

또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간업체를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반출되어 처리되는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6년 1월~5월 간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약 122만 3,500톤인데, 이 중 공공처리는 80.0%(97만 8,300톤), 민간처리는 20.0%(24만 5,200톤)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민간 처리 물량 중 4만 3,500톤(17.7%)은 충청권, 영남권 등 타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반출되어 처리되었음.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충청권 4개 시도(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공동 대응³⁾에 나서는 등 민간 위탁처리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3)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충청권,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공동 대응 강화”, 2026. 1. 27.

- 공동 대응 방안: ① 쓰레기 유입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② 불법·편법 반입 의심 처리업체 공동 점검 및 단속 협력, ③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 가동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이 도입하려는 생활폐기물 전산 입력 의무는
현행법상 사업장폐기물 규제 체계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현행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4)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
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을 취급할 때마다 인계·인
수 사항과 계량값, 위치 및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
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력된 정보를 해당 처리 주체가
직접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분에 이르는 전 유통 과정을 상시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간 위탁을 통해 타 지역으로 반출·처리되는 다량의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실시간 이동 경로 확인 체계를 도입한다면,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개
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

4)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
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
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기
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
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
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
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

현행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⁵⁾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정보 수집·제공 및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관리·분석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센터는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 점검 등 관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되는 관련 정보를 직접 공개할 수 있음.

반면, 개정안에 따른 생활폐기물 정보는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두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하도록 규정됨.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은 ‘발생원’에 따라 분류가 나뉘는 것,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인계·인수 정보를 추적하고 데이터의 적정성을 검증

5)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활동
4. 제49조에 따른 대집행 업무 지원
5. 그 밖에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17조의4 및 별표 5의8 제2호에 따른 확인
2.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장치·장비 또는 설비의 확인 및 점검(원격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
 - 나.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적정 여부 확인 및 점검
3.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4. 다음 각 목의 시스템에서 관리·제공하는 정보의 연계·분석 및 평가
 - 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입력·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하여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려는 행정 목적과 기술적 관리 방식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정보는 법률에 근거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장폐기물 정보는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전문 센터가 각각 공개하도록 이원화하는 것은 행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와 공표 주체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① 생활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전과정의 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른 지자체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생활폐기물의 배출·재활용·처분 전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적정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②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리 주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인 점을 감안할 때, 자료의 공개 주체 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경기도 포천시는 생활폐기물 반출 시마다 영상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이 증가하고 반출·입 정보 공개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977호)이 발의되었으므로, 개정안
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48